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 22 제출년월일 : 2022. 9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『지방자치법』의 전부개정('21. 1. 13. 시행)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평창군수 직의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(안 제2조, 제3조)

나. 위원회 회의(안 제4조)

다. 위원회의 직원,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(안 제5조, 제6조)

라. 위원회 수당지급 및 활동 결과보고(안 제7조,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2. 06. 10. ~ 22. 06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5조에서 위임한 평창군수직 인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,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직원)

-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)

-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, 비품,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창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, 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활동 결과보고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(白書)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·직위, 예산사용내역,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방자치법

- 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 ① 「공직선거법」 제 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(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당선인"이라 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
 -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인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.
 -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
 -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
 - 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
 -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1. 시·도: 20명 이내
 - 2. 시·군 및 자치구: 15명 이내
 - ⑥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,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⑦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

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
-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· 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인수위원회 운영기간에 한정하여 한시적이고 단기간에 발생하는 요인임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및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실장 주현관
연락처	(033) 330 - 2065